

第5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3月26日(火) 午前10時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旅費條例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旅費條例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10時00分 開議)

○議長 柳成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姜丙璽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세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城北區旅費條例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02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서화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委員長 徐化錫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1회 성북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행정위원회 서화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철모의원님.

(○崔哲模議員 의석에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개월 미만에서 7일 미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기간은 얼마나 줄 것이고 시행 날짜는 언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최철모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민원담당관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民願擔當官室長 李鍾淳 최철모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이라든지 사망 등 호적신고기간은 원래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1개월을 경과한 이후 실질적으로 한달이 30일이 있을 때에는 37일이 경과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달까지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고 한달이 지나서 신고기간이 지나서 7일이 경과돼서 신고하신 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7일이라고 그러니까 사유발생 시점부터 7일이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공포와 동시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고기간 30일이 지난 이후 7일 경과라든지 1개월 경과라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分 閉會)

○出席議員 38人

崔 哲 模	洪 性 溱	申 宗 鉉
文 京 周	金 東 殷	許 東 翼
金 順 權	宋 夏 星	柳 興 先
尹 晚 丸	權 赫 駢	金 光 植
安 敦 洙	金 榮 植	辛 在 福
朴 時 俊	李 大 一	高 允 根
徐 榮 振	徐 化 錫	金 甲 濟
俞 鎭 武	金 鈴 基	金 振 權
李 鍊 垌	柳 成 烈	羅 光 洙
趙 基 燦	丘 在 永	尹 弘 老
李 龍 燮	金 珉 奭	安 傑 珞
金 壽 榮	崔 桂 洛	李 承 魯
鄭 昌 萬	金 南 孝	

○缺席議員 4人

朴 景 錫	任 泰 根	吳 榮 作
崔 東 煥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根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參席公務員

副 區 廳 長	沈 長 錫
總 務 局 長	白 亨 奩
財 務 局 長	蔡 昇 基
民 願 擔 當 官 室 長	李 鍾 淳
總 務 課 長	田 喜 久
賦 課 課 長	金 慶 烈